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윤선생 우리집앞 영어교실”

정 보 공 개 서

(주)윤선생엘리트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4. . .

(주)윤선생엘리트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강동구 강동대로 207 2,3,4층

TEL: 02-2225-5800

FAX: 02-2225-3439

담당부서: 사업지원팀(02-2225-3458)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4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4
III.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9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20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28
VI. 가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47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49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51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53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사용 브랜드	주 소			
(주)윤선생 엘리트	“윤선생 우리집앞 영어교실”외 4개	서울시 강동구 강동대로 207 2,3,4층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1994.6.28	1994.9.5	설황수, 김성중	02-2225-5800	02-2225-3439
	법인등록번호	110111-1051442	사업자등록번호	212-81-32555	

2.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임원)	설황수 / (주)윤선생 엘리트	“윤선생 우리집앞 영어교실” 외 4개	서울시 강동구 강동대로 207 2,3,4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설황수, 김성중	02-2225-5800	02-2225-3439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임원)	김성중 / (주)윤선생 엘리트	“윤선생 우리집앞 영어교실” 외 4개	서울시 강동구 강동대로 207 2,3,4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설황수, 김성중	02-2225-5800	02-2225-3439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임원)	윤성 / (주)윤선생 엘리트	“윤선생 우리집앞 영어교실” 외 4개	서울시 강동구 강동대로 207 2,3,4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설황수, 김성중	02-2225-5800	02-2225-3439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임원)	윤데이비드 수 / (주)윤선생 엘리트	“윤선생 우리집앞 영어교실” 외 4개	서울시 강동구 강동대로 207 2,3,4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설황수, 김성중	02-2225-5800	02-2225-3439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임원)	이현종 / (주)윤선생 엘리트	“윤선생 우리집앞 영어교실” 외 4개	서울시 강동구 강동대로 207 2,3,4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설황수, 김성중	02-2225-5800	02-2225-3439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임원)	이준삼 / (주)윤선생 엘리트	“윤선생 우리집앞 영어교실” 외 4개	서울시 강동구 강동대로 207 2,3,4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설항수, 김성중	02-2225-5800	02-2225-3439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임원)	배형균 / (주)윤선생 엘리트	“윤선생 우리집앞 영어교실” 외 4개	서울시 강동구 강동대로 207 2,3,4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설항수, 김성중	02-2225-5800	02-2225-3439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한 적이 있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주)마일스톤	윤선생 우리집앞 영어교실	2023.6.30	서울시 강동구 강동대로 207, 7층	윤데이비드 수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윤선생 우리집앞 영어교실」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윤선생 우리집앞 영어교실”	
상 호	윤선생 우리집앞 영어교실 00교습소/공부방	
상표(서비스표)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4017128810000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4017128830000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4017353080000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4017352740000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4017128840000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4017128850000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4017352750000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4017352760000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4010253030000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4010254590000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4102847850000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4102847950000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4017128860000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4017128870000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4017352770000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4017352780000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4009541790000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4009468230000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4102557950000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4102523150000
	 우리집앞 영어교실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4009542330000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4009467850000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4102558030000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4102522890000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4017128810000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4017128830000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4017353080000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4017352740000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4017128840000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4017128850000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4017352750000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4017352760000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4010253030000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4010254590000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4102847850000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4102847950000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4017128860000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4017128870000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4017352770000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4017352780000
광 고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우리집앞 영어교실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4009541790000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4009468230000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4102557950000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4102523150000
	 우리집앞 영어교실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4009542330000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4009467850000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4102558030000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4102522890000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
2021년	18,017,392	17,224,134	793,258	22,272,847	-3,970,094	-3,966,723
2022년	15,590,583	18,324,933	-2,734,349	19,227,652	-3,431,281	-3,527,607
2023년	20,147,171	25,505,537	-5,358,366	19,778,712	-4,150,624	-4,339,017

그 근거자료는 [별첨1] “재무제표”와 같습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당사는 가맹사업(“윤선생 우리집앞 영어교실”, “윤선생영어교실”, “윤선생영어숲”, “윤선생 IGSE아카데미”) 외 임대업 및 통신판매업 등을 하고 있으며(2023년말 기준),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공급하는 학습프로그램 매출액으로 구성됩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설항수	대표이사	2022.9. ~ 현재	(주)윤선생엘리트 대표이사	회사업무 총괄
	김성중	대표이사	2016.6. ~ 현재	(주)윤선생엘리트 대표이사	회사업무 총괄
	윤성	이사	2022.1 ~ 현재	(주)윤선생엘리트 이사	회사업무 총괄
	윤데이비드수	이사	2022.1 ~ 현재	(주)윤선생엘리트 이사	회사업무 총괄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	이현종	이사	1996.11. ~ 2008.12.	(주)윤선생엘리트 감사	회사 감사
			2008.12. ~ 2009.6.	(주)윤선생엘리트 대표이사	회사업무 총괄
			2009.6. ~ 2010.2.	(주)윤선생엘리트 대표이사	회사업무 총괄
			2010.2. ~ 2013.3	(주)윤선생엘리트 공동대표이사	회사업무 총괄
			2013.3 ~ 2014.3	(주)윤선생엘리트 대표이사	회사업무 총괄
			2014.3 ~ 현재	(주)윤선생엘리트 이사	회사업무 자문
	이준삼	이사	2018.7 ~ 현재	(주)윤선생엘리트 이사	회사업무 자문
	배형균	감사	2018.7 ~ 현재	(주)윤선생엘리트 감사	회사 감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작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4	3	75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윤선생 엘리트	가맹사업 경영	1995.12. ~ 현재	“윤선생영어교실” (등록번호: 20080100484) 이라는 영업표지의 방문판매 영어교육 상품 가맹사업(교육서비스) 경영
가맹본부	(주)윤선생 엘리트	가맹사업 경영	2017.12.1. ~ 현재	“윤선생 IGSE아카데미” (등록번호: 20171552) 라는 영업표지의 중·고등 중심 SB(스마트베플리) 기반의 학원 영어교육 상품 가맹사업(교육서비스) 경영
가맹본부	(주)윤선생 엘리트	가맹사업 경영	2011.11.25. ~ 현재	“윤선생영어숲” (등록번호: 20110100613) 이라는 영업표지의 초등 중심 SB(스마트베플리) 기반의 학원 영어교육 상품 가맹사업(교육서비스) 경영
가맹본부	(주)윤선생 엘리트	가맹사업 경영	2020.2.26. ~ 2021.11.16. * 정보공개서 자진취소	“큐리매쓰” (등록번호: 20200057) 라는 영업표지의 초등 중심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 수학교육 상품 가맹사업(교육서비스) 경영
가맹본부	(주)윤선생 엘리트	가맹사업 경영	2023.5.25. ~ 현재	“윤선생 키즈리그” (등록번호: 20230750) 라는 영업표지의 5~8세 대상 창의융합 그룹수업 중심의 영어교육 상품 가맹사업(교육서비스)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 내용	출원일 및 등록일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상표권)	상품 홍보	2020.04.08 출원	출원 4020200058655	(주)현대 영어사 / 이문자	2031.04.07 (2031.04.07)
		2021.04.07 등록	등록 4017128810000		

명칭	권리 내용	출원일 및 등록일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상표권)	상품 홍보	2020.04.08 출원	출원 4020200058656	(주)현대 영어사 / 이문자	2031.04.07 (2031.04.07)
		2021.04.07 등록	등록 4017128830000		
 (서비스표권)	가맹점 상호	2020.04.08 출원	출원 4020200058657	(주)현대 영어사 / 이문자	2031.06.03 (2031.06.03)
		2021.06.03. 등록	등록 4017353080000		
 (서비스표권)	가맹점 상호	2020.04.08 출원	출원 4020200058658	(주)현대 영어사 / 이문자	2031.06.03 (2031.06.03)
		2021.06.03. 등록	등록 4017352740000		
 (상표권)	상품 홍보	2020.04.08 출원	출원 4020200058659	(주)현대 영어사 / 이문자	2031.04.07 (2031.04.07)
		2021.04.07 등록	등록 4017128840000		
 (상표권)	상품 홍보	2020.04.08 출원	출원 4020200058660	(주)현대 영어사 / 이문자	2031.04.07 (2031.04.07)
		2021.04.07 등록	등록 4017128850000		
 (서비스표권)	가맹점 상호	2020.04.08 출원	출원 4020200058661	(주)현대 영어사 / 이문자	2031.06.03 (2031.06.03)
		2021.06.03 등록	등록 4017352750000		

명칭	권리 내용	출원일 및 등록일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서비스표권)	가맹점 상호	2020.04.08 출원	출원 4020200058662	(주)현대 영어사 / 이문자	2031.06.03 (2031.06.03)
		2021.06.03 등록	등록 4017352760000		
 (상표권)	상품 홍보	2013.03.12 출원	출원 4020130015252	(주)현대 영어사 / 이문자	2034.03.03 (2034.03.03)
		2014.03.03 등록	등록 4010253030000		
 (상표권)	상품 홍보	2013.03.12 출원	출원 4020130015254	(주)현대 영어사 / 이문자	2034.03.03 (2034.03.03)
		2014.03.03 등록	등록 4010254590000		
 (서비스표권)	가맹점 상호	2013.03.12 출원	출원 4120130008941	(주)현대 영어사 / 이문자	2034.04.02 (2034.04.02)
		2014.04.02 등록	등록 4102847850000		
 (서비스표권)	가맹점 상호	2013.03.12 출원	출원 4120130008945	(주)현대 영어사 / 이문자	2034.03.03 (2034.03.03)
		2014.03.03 등록	등록 4102847950000		
 (상표권)	상품 홍보	2020.04.08 출원	출원 4020200058663	(주)현대 영어사 / 이문자	2031.04.07 (2031.04.07)
		2021.04.07 등록	등록 4017128860000		

명칭	권리 내용	출원일 및 등록일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상표권)	상품 홍보	2020.04.08 출원	출원 4020200058664	(주)현대 영어사 / 이문자	2031.04.07 (2031.04.07)
		2021.04.07 등록	등록 4017128870000		
 (서비스표권)	가맹점 상호	2020.04.08 출원	출원 4020200058665	(주)현대 영어사 / 이문자	2031.06.03 (2031.06.03)
		2021.06.03 등록	등록 4017352770000		
 (서비스표권)	가맹점 상호	2020.04.08 출원	출원 4020200058666	(주)현대 영어사 / 이문자	2031.06.03 (2031.06.03)
		2021.06.03 등록	등록 4017352780000		
 우리집앞 영어교실 (상표권)	상품 홍보	2012.09.03 출원	출원 4020120055218	(주)현대 영어사 / 이문자	2033.02.19 (2033.02.19)
		2013.02.19 등록	등록 4009541790000		
 우리집앞 영어교실 (상표권)	상품 홍보	2012.09.03 출원	출원 4020120055219	(주)현대 영어사 / 이문자	2033.01.02 (2033.01.02)
		2013.01.02 등록	등록 4009468230000		
 우리집앞 영어교실 (서비스표권)	가맹점 상호	2012.09.03 출원	출원 4120120029803	(주)현대 영어사 / 이문자	2033.04.03 (2033.04.03)
		2013.04.03 등록	등록 4102557950000		
 우리집앞 영어교실 (서비스표권)	가맹점 상호	2012.09.03 출원	출원 4120120029804	(주)현대 영어사 / 이문자	2033.02.19 (2033.02.19)
		2013.02.19 등록	등록 4102523150000		
 우리집앞 영어교실 (상표권)	상품 홍보	2012.09.03 출원	출원 4020120055220	(주)현대 영어사 / 이문자	2033.02.19 (2033.02.19)
		2013.02.19 등록	등록 4009542330000		

명칭	권리 내용	출원일 및 등록일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이문자	
 우리집앞 영어교실 (상표권)	상품 홍보	2012.09.03 출원	출원 4020120055221	(주)현대 영어사 / 이문자	2033.01.02 (2033.01.02)
		2013.01.02 등록	등록 4009467850000		
 우리집앞 영어교실 (서비스표권)	가맹점 상호	2012.09.03 출원	출원 4120120029805	(주)현대 영어사 / 이문자	2033.04.03 (2033.04.03)
		2013.04.03 등록	등록 4102558030000		
 우리집앞 영어교실 (서비스표권)	가맹점 상호	2012.09.03 출원	출원 4120120029806	(주)현대 영어사 / 이문자	2033.02.19 (2033.02.19)
		2013.02.19 등록	등록 4102522890000		

상표권(서비스표권)은 특허청에 등록된 때로부터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상기 상표권(서비스표권) 중 현재 등록되지 아니한 상표권(서비스표권)은 상표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 (<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윤선생 우리집앞 영어교실”을 시작한 날: 2015년 9월 1일

2. “윤선생 우리집앞 영어교실”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이이씨 엘리트	“윤선생 우리집앞 영어교실”	전덕수	2015.9.1. ~ 2016.6.16.	서울시 강동구 강동대로 205 한미빌딩
(주)이이씨 엘리트	“윤선생 우리집앞 영어교실”	현종현 소진석 김성중	2016.6.16. ~ 2016.8.23	서울시 강동구 강동대로 205 한미빌딩
(주)이이씨 엘리트	“윤선생 우리집앞 영어교실”	현종현 소진석 김성중	2016.8.24. ~ 2018.7.20	서울시 강동구 강동대로 207 2,3,4층
(주)이이씨 엘리트	“윤선생 우리집앞 영어교실”	김성중	2018.7.20. ~ 2019.6.30	서울시 강동구 강동대로 207 2,3,4층
(주)마일스톤	“윤선생 우리집앞 영어교실”	윤데이비드수	2019.7.1. ~ 2021.3.18	서울시 강동구 강동대로 207 7층
(주)마일스톤	“윤선생 우리집앞 영어교실”	김원준	2021.3.19. ~ 2023.1.31.	서울시 강동구 강동대로 207 7층
(주)마일스톤	“윤선생 우리집앞 영어교실”	윤데이비드수	2023.2.1. ~ 2023.6.30.	서울시 강동구 강동대로 207 7층
(주)윤선생 엘리트	“윤선생 우리집앞 영어교실”	설황수 김성중	2023.6.30. ~ 현재	서울시 강동구 강동대로 207 2,3,4층

3. “윤선생 우리집앞 영어교실” 업종

영업표지	업종	
윤선생 우리집앞 영어교실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교육(외국어)	교습소/개인과외교습 영어교육 상품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윤선생 우리집앞 영어교실”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636	636	-	680	680	-	688	688	-
서울	99	99	-	102	102	-	96	96	-
부산	40	40	-	47	47	-	57	57	-
대구	22	22	-	26	26	-	28	28	-
인천	35	35	-	40	40	-	37	37	-

광주	16	16	-	16	16	-	18	18	-
대전	17	17	-	16	16	-	19	19	-
울산	13	13	-	15	15	-	15	15	-
세종	12	12	-	12	12	-	13	13	-
경기	178	178	-	190	190	-	198	198	-
강원	15	15	-	16	16	-	16	16	-
충북	20	20	-	20	20	-	19	19	-
충남	32	32	-	30	30	-	31	31	-
전북	18	18	-	26	26	-	25	25	-
전남	20	20	-	21	21	-	18	18	-
경북	40	40	-	40	40	-	36	36	-
경남	58	58	-	60	60	-	58	58	-
제주	1	1	-	3	3	-	4	4	-

5. 바로 전 3년간 “윤선생 우리집앞 영어교실”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651	62	23	54	10	636
2022	636	103	22	37	15	680
2023	680	94	21	65	17	688

“윤선생 우리집앞 영어교실” 가맹점의 자세한 내역은 [별첨2] “전국 가맹점 현황표”를 확인하십시오.

6. “윤선생 우리집앞 영어교실”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윤선생 우리집앞 영어교실” 외에도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업종	가맹점/직영점의수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맹본부	(주)윤선생 엘리트	“윤선생 영어교실”	20080100484	교육 (외국어)	238/0	222/0	206/0
가맹본부	(주)윤선생 엘리트	“윤선생 영어숲”	20110100613	교육 (외국어)	239/0	223/0	203/0
가맹본부	(주)윤선생 엘리트	“윤선생 IGSE 아카데미”	20171552	교육 (외국어)	244/0	234/0	226/0
가맹본부	(주)윤선생 엘리트	“윤선생 키즈리그”	0230750	교육 (외국어)	-	-	-
가맹본부	(주)윤선생 엘리트	“큐리매쓰”	20200057	교육 (교과)	21/0	-	-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윤선생 우리집앞 영어교실”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23년 12월 31일 기준 전국시도별 가맹점수 및 매출액 추정자료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년말 가맹점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평균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2당	상한	면적 3.3m2당	하한	면적 3.3m2당	
전체	688	36,510	1,738	155,073	14,518	269	13	
서울	96	43,717	2,488	139,346	14,518	4,426	133	
부산	57	34,566	1,774	115,284	8,477	540	31	
대구	28	27,454	1,276	118,123	8,846	1,068	32	
인천	37	32,180	1,452	98,068	5,673	3,363	131	
광주	18	44,437	1,919	95,892	8,717	1,834	125	
대전	19	39,928	2,890	95,970	11,334	2,185	238	
울산	15	49,699	2,351	121,997	5,826	15,316	613	
세종	13	66,666	2,944	118,823	7,922	14,962	880	
경기	198	34,547	1,574	155,073	10,241	690	36	
강원	16	34,028	1,601	64,773	7,463	1,904	214	
충북	19	33,635	1,615	95,765	5,000	2,230	107	
충남	31	36,601	1,634	110,371	7,415	7,226	398	
전북	25	40,039	1,659	136,861	5,776	1,611	48	
전남	18	28,761	1,117	62,289	2,408	2,187	146	
경북	36	46,673	2,322	130,536	8,010	3,728	103	
경남	58	26,157	1,167	96,294	8,647	269	13	
제주	4	31,271	927	41,202	1,952	11,817	564	5곳 미만

위 내용은 다음의 산식을 따른 것입니다.

[매출액 = 가맹점이 부담하는 월정액 전체 금액을 근거로 연간회원수 추정 * 18만원]

가맹점이 부담하는 월정액 금액은 매월 회원당 39,600원(표준)이므로 이를 근거로 연간회원수를 추정하고, 회원당 교습비는 지역에 따라 15 ~ 22만원이므로 평균가격인 18만원을 근거로 매출액을 추정하였습니다. (그외 기타 부가(체험)학습은 추정이 어려워 매출액 산정에서 제외하였음)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수치로 포함하였으나, 23년 7월 이후 영업을 개시한 25개 가맹점(SK북한산시티, 상봉두드림, 명지명일초, 물운대초, 부산배산, 호암초, 대구삼정그린코아카운티, 검단예미지예일, 일곡청솔2차, 도안아이파크, 세종나성풍경채, 광명초, 부천상인

공부방, 금곡엘지빌리지, 안산해솔, 안양센텀퍼스트, 안양샘모루공부방, 씨엘포레자이, 하늘빛마을, 오산호반써밋라포레, 위례포레자이, 아산음봉해링턴, 청당서희스타힐스, 진해용원, 하귀Choi'sEnglish) 매출액은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추정 근거자료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표에서 기재한 연간 평균 매출액은 전체 가맹점 수 688개가 아닌 실제 663개 가맹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추정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가맹본부 사업지원팀으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윤선생 우리집앞 영어교실”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윤선생 우리집앞 영어교실”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688	1,736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윤선생 우리집앞 영어교실”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44곳의 가맹지역본부(통합가맹지역본부, 우영가맹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첨3] “전국 가맹지역본부 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윤선생 우리집앞 영어교실”과 관련하여 광고선전비 및 판매촉진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209,083	163,690	45,393	
광고선전	비공개	비공개	154,727	154,727	0	
판매촉진	비공개	비공개	54,356	8,963	45,393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가맹금은 국민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주)국민은행	개인 상품부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172-1	02-488-2694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국민은행에 가맹계약체결일에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국민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기업서비스’ -> ‘SOHO센터’ -> ‘가맹금예치제도’ 메뉴안의 ‘가맹점사업자’를 선택하고 ‘가맹금예치금 예치’를 클릭한 다음 ‘가맹본부조회’를 통해 (주)윤선생엘리트를 찾아 금액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국민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1.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 없음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가맹점/가맹점사업자’는 이하 ‘가맹거점’ 또는 ‘가맹거점사업자’라고도 합니다.)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윤선생 우리집앞 영어교실”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 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영업개시준비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금액

1) 영업개시준비금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1) 영업개시준비금 소요내역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입금기한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총계	200만원	계약체결일 당일 예치	* 영업개시준비금은 개점을 위한 소멸성 비용으로 영업개시 이후 반환되지 않고, 특히 개점 교육비의 경우 지정 교육일에 가맹점사업자는 반드시 참가하여야 하며, 불참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거나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가입비	180만원		
개점 교육비	20만원		

2)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부가세 포함)
합계	200만원
영업개시준비금	200만원

* 상기 영업개시준비금은 당사의 영업정책에 따라 한시적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귀하가 그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품 목	지급대상	금 액 (49.5㎡기준/단위:원/VAT포함)		면적 33㎡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교습소형	공부방형			
SB 학습기	가맹점 사업자 개인이 선택한 업체	최저가 상품 개인구매	최저가 상품 개인구매	-	가맹점 사업자 개인이 선택한 업체의 개별계약 내용에 따름	가맹점 사업자 개인이 선택한 업체의 개별계약 내용에 따름
SB 학습기 거치대 및 젠더	가맹점 사업자 개인이 선택한 업체	최저가 상품 개인구매	최저가 상품 개인구매	-	가맹점 사업자 개인이 선택한 업체의 개별계약 내용에 따름	가맹점 사업자 개인이 선택한 업체의 개별계약 내용에 따름
무선AP 기기	당사 또는 가맹점사 업자 개인이 선택한 업체	무선네트워크 장비 (AP + 인젝터) 236,000 (무선네트워크 장비 1대 설치기준)		-	개별계약 내용에 따름	개별계약 내용에 따름
SB 시스템 설치	가맹점 사업자 개인이 선택한 업체	최저가 상품 개인구매		-	가맹점 사업자 개인이 선택한 업체의 개별계약 내용에 따름	가맹점 사업자 개인이 선택한 업체의 개별계약 내용에 따름
어학용 책상 및 의자		책상 342,000 (9대기준/개당 38,000)	책상 190,000 (5대기준/개당 38,000)	-		

		의자 216,000 (9대기준/개당 24,000)	의자 120,000 (5대기준/개당 24,000)			
인테리어	가맹점 사업자 개인이 선택한 업체	9,000,000	1,500,000	교습소: 600,000원 / 공부방: 100,000원	가맹점 사업자 개인이 선택한 업체의 개별계약 내용에 따름	가맹점 사업자 개인이 선택한 업체의 개별계약 내용에 따름
설비		3,000,000	1,000,000	교습소: 200,000원 / 공부방형 67,000원		
간판		2,000,000	-	교습소: 134,000원		
합 계		14,794,000	3,046,000			

※ 위 표의 금액은 당사 가맹거점 인테리어 및 설비 평균 금액을 표시한 것으로 가맹거점의 면적, 지역, 인테리어 수준 등에 따라 실제 소요금액과 상이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 관련하여 별도 A/S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4)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가맹본부와 협의 후 신규 개설지역 확정 → 가맹점 개설 공지 → 가맹희망자에게 사업 설명 및 상담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 구함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추천할 수 있음

5)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기준

가맹점사업자의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기준
가맹점사업자	신설 가맹점사업자 교육 과정 이수	* “윤선생 우리집앞 영어교실”과 함께 지역 교육 사업자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 * “윤선생 우리집앞 영어교실” 교습소 운영을 희망 하는 경우, 전문대졸업자 혹은 이와 동등한 학력 소유자(공부방형은 해당 없음)

6)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윤선생 우리집앞 영어교실”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설비가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7) 한편, 귀하는 당사에 가맹금 납부시 일시에 완납하여야 하며 분납할 수 없습니다.

8) 가맹점 시설 및 사무환경지침 사항

가맹점의 내부시설, 옥외간판, 유리창 썬팅, 광고물, 기타 선전매체의 제작 및 배포등과 관련하여서는 가맹본부가 제시한 가맹사업 표준지침(“윤선생 우리집앞 영어교실 가맹거점 시설 및 사무환경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위 시설 및 사무공간등은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윤선생 우리집앞 영어교실』 가맹사업거래만을 위한 장소·공간등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동종의 경쟁영업을 위한 장소·공간 등 가맹본부가 제시하지 않거나 금지하는 장소·공간등으로 일절 사용되어서는 아니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학사시스템 이용료	당사가 지정한 우영본부	매월 33,000원 (VAT 포함)	매월 말일까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리모델링 비용	가맹점사업자 개인이 선택한 업체	전액 부담	개별사업장 상황에 따른 판단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점포환경 개선비용	가맹점사업자 개인이 선택한 업체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49페이지 참조
지연이자	당사	연20% (부가세 대상 아님)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당사의 순수익이 아니며, 2023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 합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귀하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당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사는 ‘당사의

임직원 또는 당사가 지정·위촉한 자문요원, 당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우영본부장' 등을 파견하여 당사가 공급하는 상품설명 관련사항, 당해 가맹점의 회원증가 및 상품판매촉진 관련사항, 당해 가맹점의 회계 및 세무처리 관련사항, 지역단위별 또는 우영본부별 영업활성화 관련사항, 기타 거점 운영 및 지원 관련사항 등에 대한 유·무상 경영지도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한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윤선생 우리집앞 영어교실” 가맹사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귀하는 제3자(가맹본부)와의 계약관계 유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윤선생 우리집앞 영어교실” 교습소/개인과외교습(가맹점) 사업 운영을 위하여 귀하에게 그 사용을 허락한 상표권·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및 독점적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소멸할 경우, 당사는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이를 해결·처리하여 귀하의 지속적인 가맹사업영위에 장애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귀하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기간 위반으로 인해 계약종료시 부담

귀하가 계약기간을 임의로 위반할 경우 일금 오백만원정(₩5,000,000)을 당사에 위약벌로써 지급하여야 하며, 본 계약을 갱신하여 갱신된 계약기간을 임의로 위반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위약벌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

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4)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윤선생 우리집앞 영어교실” 운영권을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허락을 얻어 다른 사람(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대한 별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기 양도시 다른 사람(제3자·양수 가맹점사업자)이 가맹본부와의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점 교육비(20만원)와 정착교육비(80만원)을 가맹본부에 납부하고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5)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윤선생 우리집앞 영어교실” 브랜드에 수반되는 일체의 교재·교육사업·광고등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간판·유인물, 교재 및 부속물·판촉물·광고물 및 114전화 안내서비스등에 있어서 그 직·간접적 사용을 금합니다)
- 기존의 “윤선생 우리집앞 영어교실” 건물·시설이 마치 “윤선생 우리집앞 영어교실” 교실을 위한 부속사업장소인 듯 그 외양을 갖추면서 ‘이른바 학원·학습관·공부방·과외방·교습소등의 여타 집합교육 목적용 시설물’로 일절 이용될 수 없습니다.
- 타지역에 소재한 “윤선생 우리집앞 영어교실”등을 통하여 “윤선생 우리집앞 영어교실” 교재를 무단반입 또는 불법유통시키는 방법등으로 가맹본부와 무관하게 “윤선생 우리집앞 영어교실” 판매 및 유통행위등을 병행 또는 계속할 수 없습니다.
- “일반 소비자고객, 그간의 “윤선생 우리집앞 영어교실” 회원고객명단 등 제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마치 그간의 “윤선생 우리집앞 영어교실”사업이 여전히 계속 되고 있는 듯, 여타 학원사업등과 함께 병행될 수 있는 듯」 가장하여 고객을 유인·혼동시키는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 불공정한 방법으로 경쟁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 가맹본부가 허락하지 아니한 유인물이나 가맹본부가 알지 못하는 유인물을 가맹점사업자가 무단으로 제작하여 마치 가맹본부가 작성한 것처럼 유통시켜서는 아니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윤선생 우리집앞 영어교실”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윤선생 우리집앞 영어교실”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위 경제적 이익의 내용은 계열회사의 순수익이 아닌 매출액을 의미하며, 계열회사가

“윤선생 우리집앞 영어교실”에서 수취한 2023년도 매출액의 합계금액입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가 수취하는 대가

당사는 “윤선생 우리집앞 영어교실”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주선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2) 특수관계인이 수취하는 대가

당사가 “윤선생 우리집앞 영어교실”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제공’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 상품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윤선생 우리집앞 영어교실 교습소/개인과외 교습프로그램 학습상품 및 제반 교육보조재 등	- 가맹본부가 귀하에게 공급하는 교재상품인 ‘윤선생 우리집앞 영어교실 교습소/개인과외교습프로그램학습상품 및 제반 교육보조재등’을 귀하가 당사를 위한 전속적 지위에서 소비자 회원고객에게 판매·제공함에 있어 귀하는 위 윤선생 우리집앞 영어교실 교습소/개인과외교습프로그램판매영업방침등에따른 회원교육 및 판매영업활동에 관한 표준화된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기로 합니다. -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소정의 사업자로서 적법한 가맹상품을 가맹본부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우영본부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판매·공급하고 거래명세서를 제공하며, 귀하 또한 반드시 동 가맹상품을 반드시 가맹본부가 지정한 우영본부를 통하여 공급받으며, 타 가맹점사업자 또는 기타 유	- 현금출고원칙적용 - 본사 제반 지원사항의 제한 - 출고정지 - 계약해지 - 손해배상책임

판매 상품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윤선생 우리집앞 영어교실 교습소/개인과외 교습프로그램 학습상품 및 제반 교육보조재 등	통 경로를 통하여 구입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보공개서의 제한내용에 따라 가맹상품등 의 판매 제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u>가맹점사업자는 독립사업자로서 가맹점사업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구비하여야 하되, <교습소/개인과외교습업에 관한 학원법 소정의 사업자요건>등 관계법령이 요구하는 신고·등록·허가등 의무를 필해야 합니다.</u> - <u>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광고매체 및 홍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공개한 윤선생 우리집앞 영어교실 교습소/개인과외교습프로그램학습방법 및 판매영업방침’에 의거하여서만 회원을 유치하고 제반 판매영업활동을 수행하여야 합니다.</u> - 가맹점사업자는 사회에 공헌하는 교육자적 정신으로 상품판매 및 제반영업활동을 수행하기로 하고, 소비자를 기만하고 불만을 심각하게 초래하여 가맹본부의 영업이익을 해치며 시장질서유지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가맹본부 또는 “윤선생 우리집앞 영어교실”의 명예, 브랜드 이미지, 신뢰도, 업계에서의 평가 등을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지 아니합니다. - <u>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의 거래조건으로서 “윤선생 우리집앞 영어교실” 영어학습회원 고객에 한정해서 그 상품을 전속적으로 판매하여야 하며, ‘일반서적상, 일반학원, 일반교습소, 가맹본부로부터 출고정지중인 가맹거점, 정상적인 가맹거점사업자가 아닌 제3자, 회원아닌 일반인’등에게 별도판매하거나 불법유통시켜서는 아니됩니다.</u> - 가맹점사업자는 불법적 또는 비윤리적인 회원유인과 학습지도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회원의 학습진도관리 점검 및 학습의욕고취, 학습단계별 교재상품의 계속적인 공급 및 홍보차원에서만 성실하게 회원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유지를 위하여 시행하는 가맹지역본부제도에 참여·준수·이행하여야 되고, 가맹사업 활성화	
윤선생 우리집앞 영어교실 교습소/개인과외		

판매 상품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교습프로그램 학습상품 및 제반 교육보조재 등	화를 위한 우영본부장 역할에 따른 업무적 방침·지침·지시에 따라야합니다. - <u>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제시한 교재판 매·회원모집 및 학습진도관리방법 이외의 별도행위(과외지도, 가맹본부가 공급하지 아니한 타 영어학습프로그램 제공, 가맹본부의 가맹사업과 시간적·장소적·인력적으로 배치·중복되는 이중의 논술·수학학습 이중 학원업 병행등)를 따로 하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윤선생 우리집앞 영어교실” 가맹 교재의 통일성있는 윤선생 우리집앞 영어교실 교습소/개인과외교습프로그램판매사업의 오인혼동을 초래할만한 일체의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u>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윤선생 우리집 앞 영어교실 교습소/개인과외교습프로그램 학습방법, 윤선생 우리집앞 영어교실 교습소/개인과외교습프로그램판매영업방침, 회원교육 및 판매영업활동의 통일성 유지를 위한 YoonsTV 교육방송서비스를 시청하여야 합니다. - <u>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윤선생 우리집앞 영어교실」가맹사업 관련 전용 교재 상품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본부의 판단에 따라 「윤선생 우리집앞 영어교실」전용교재 상품의 단계별 완성도에 맞춰 [별첨4] 상품공급내역 일체를 「윤선생 우리집앞 영어교실」전용교재 상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u>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유지·확대와 윤선생 우리집앞 영어교실 교습소/개인과외교습프로그램의 품질 및 동일성·학습난이도수준 유지를 위하여 가맹본부가 정한·제시한 회원학습교육지도분량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기존의 윤선생 우리집앞 영어교실 교습소/개인과외교습프로그램 상품타겟시장과 ‘학년층 및 연령대상’을 달리하거나 또는 기존의 윤선생 우리집앞 영어교실 교습소/개인과외교습프로그램교육과 학년·연령대상 및 학습방법을 달리하는 새로운 특화 상품이 개발·출시되는 경우, 가맹본부는 ‘신시장 신교재 조기정착 가능성부, 가맹점사업자의 기본 계약 이행여부, 해당지역의 시장규모와 거점규모, 가맹점사업자의 회원교육 및 판매영업활동에 대한 통일성 준수여부, 전국적 지역적 영업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해당 특화 신상품 공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신상품 공급과 관련한 거래조건은 가맹본부, 우영본부 및 가맹점 사업자간의 신상품별 별도 약정에 의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당사가 지정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제한받는 상품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 “윤선생 우리집 앞 영어교실” 영어학습 회원고객이 아닌자 - 일반서적상, 일반학원, 일반교습소, 가맹본사로 부터 출고정지 중인 가맹거점, 정상적인 가맹거점 사업자가 아닌 제3자, 회원 아닌 일반인 등	윤선생 우리집 앞 영어교실 교습소/개인과 외교습프로그램 학습상품 및 제반 교육보조재등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의 거래조건으로서 “윤선생 우리집 앞 영어교실” 영어학습 회원고객에 한정해서 그 상품을 전속적으로 판매하여야 하며, ‘일반서적상, 일반학원, 일반교습소, 가맹본부로부터 출고정지 중인 가맹거점, 정상적인 가맹거점 사업자가 아닌 제3자, 회원 아닌 일반인’등에게 별도로 판매하거나 불법유통시켜서는 아니됩니다.	- 현금출고원칙적용 - 본사 제반 지원사항의 제한 - 출고정지 - 계약해지 - 손해배상책임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해당 없음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초·중등 대상의 SB(스마트베플리)를 활용한 자기주도학습 중심의 영어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윤선생 우리집앞 영어교실, 윤선생영어숲, 윤선생 IGSE아카데미	해당 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교습소 : 1,000세대 당 1 사업장·가맹점 개인과외교습 : 500세대 당 1 사업장·가맹점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귀하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윤선생 우리집앞 영어교실”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윤선생 우리집앞 영어교실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영업표지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대리점	윤선생 웰스터디	Yoon's SMART Kids Phonics Time Yoon's SMART Phonics Time Listening&Speaking Trek 1A Reading Trek 1A Reading Trek 1B Listening&Speaking Trek 2A Reading Trek 2A Reading Trek 2B Listening&Speaking Trek 3A Reading Trek 3A Listening&Speaking Trek 3B Reading Trek 3B Reading Trek 3C Writing Trek 3A Listening&Speaking Trek 4A	세부업종이 다름

		Reading Trek Starter Reading Trek 4A Listening&Speaking Trek 4B Reading Trek 4B Writing Trek 4A Listening&Speaking Trek 5A Reading Trek 5A Reading Trek 5B Writing Trek 5A Grammar Trek 5A Listening&Speaking Trek 6A Reading Trek 6A Writing Trek 6A Grammar Trek 6A 핵집중예비중학영어 핵집중중학문법 핵집중중학독해7A 핵집중중학영어1학년 핵집중중학독해7B 핵집중중학독해8A 핵집중중학독해8B 핵집중중학영어2학년	
--	--	--	--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윤선생 우리집앞 영어교실”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영업개시준비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7조, 제8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가맹영업방침·지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서 전문 제1조, 제3조,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

	28조,제29조, 제30조, 제31조,제32조
○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3조 제4조 제22조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않은 경우	제14조 제15조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13조 제19조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18조
○ 동종조건·규모의 인근가맹거점에 현저히 미달하는 심각한 영업력저하가 있는 경우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당사, 우영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일정기간을 두고 그 시정을 최고하여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합니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위배한 경우 2. 특히 가맹계약서 제10조(상품제공내역 및 공급가), 제11조(상품주문 및 대금의 결제), 제19조(지적재산권의 보호), 제23조(분쟁의 조정) 및 제24조(동종·이종영업 및 경업의 제한) 위반을 비롯하여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내용 및 상호 신뢰관계를 위반하여 더이상 계약을 지속시	

킬 수 없다고 당사가 판단하는 경우등 (예: 가맹사업의 본질 및 유지에 배치되는, 수학·논술등 타과목 강습행위등 포함)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1) 그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2)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3)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제26조 제(2)항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제26조 제(2)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26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영업정책 변경등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15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양도, 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을 다시 사들여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는 당사의 사전 서면허락없이 임의로 센터를 양도하거나 회원고객매매·무단명의변경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무단양도 및 임의의 회원고객매매·명의변경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당사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특히 귀하가 임의로 대표이사를 교체시키거나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명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가맹계약서의 계약당사자지위를 교체·포기하고서 센터사업권을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양도처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가맹점운영권 양도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이내)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계약 체결 → 양수인 개점 교육비 납입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사업지원팀 (02-2225-5706)

3) 가맹점운영권의 양수

귀하가 “윤선생 우리집앞 영어교실” 운영권을 가맹본부의 최종 승인을 얻어 이전(기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양수할 경우에는 귀하는 이전(기존) 가맹점사업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귀하는 가맹본부에 개점 교육비(20만원)와 정착교육비(80만원)를 지급해야합니다.

4)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귀하의 상속인은 다음의 절차를 통해 가맹점 운영권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확인서를 첨부하여 승계의 의사를 가맹본부에 통지하고, 신규사업자 면접을 통과하면 영업개시 전까지 개점 교육비(20만원)를 부담하고 교육을 이수 한 경우 본 계약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인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5) 가맹점운영권의 대리행사, 위탁 등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대리행사, 위탁 등을 승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는 제3자 및 가족관계에 있는 자를 관리인, 관재인, 대리인, 수탁관리자 및 동업인, 사업자등록명의인 형식으로 내세워 그 제3자등에게 귀하의 가맹점 사장 명의를 실질적으로 대여하거나 영업관리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 귀하가 아래와 같은 동종영업 및 경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비고
○ <u>당사의 상품과 직·간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또는 소비자고객의 중첩 및 시간적·장소적·인적·물적으로 배치·중복되는 경우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본질에 배치되거나 가맹브랜드의 명성을 훼손하거나 경쟁력저해 우려가 있는 동종업종의 타사 학습관련제품을 판매하거나 강습하는 행위 (당사가 공급하지 아니한 교재·인터넷·기타 전자적·비전자적 방법등, 타사의 영어학습프로그램 제공등)</u>	문의: 사업지원팀 (02-2225-5706)

○ <u>가맹점사업자는 위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외견·형식상으로만 사업자등록명의인을 달리 기재하고서 가맹거점의 동일 건물, 동일 시설물 또는 인접 건물에서 실질적으로 가맹점사업자가 그 경영지배력을 유지하는 방법(부부·형제의 명의를 형식적으로 수탁받는 방법등)으로 가맹사업본질 및 브랜드 명성을 해치는 동종영업 및 경영행위</u> ○ <u>가맹점사업자는 당사가 제시한 교재판매·회원모집 및 학습진도관리방법 이외의 별도행위(과외지도, 당사가 공급하지 아니한 타영어학습프로그램 제공 등)를 따로 하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윤선생 우리집앞 영어교실” 가맹교재의 통일성있는 윤선생 우리집앞 영어교실 교습소/개인과외교습프로그램판매 사업의 오인혼동을 초래할만한 일체의 행위 등</u>	
---	--

- * 귀하가 계약체결일 현재 ‘동종의 경쟁가맹사업·학원업·학습관사업에 종사해 온 경우’에는 그 해당 사업자등록 내역을 별첨서류로 제출하여 “윤선생 우리집앞 영어교실” 가맹사업본질 및 유지에 저해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미리 당사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귀하는 “윤선생 우리집앞 영어교실”의 영업시간(일 8시간) 및 영업일수(주 5일 이상)를 준수해야 합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시장

5) 아동·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 준수 및 성범죄 경력조회 및 결과 통보

귀하는 아동·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새로운 시장상황의 변화, 동종업체와의 경쟁력 제고 필요성, 신상품소개 및 홍보’등을 위하여 당사가 전국적인 신문·방송매체등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광고·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와의 비용 분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는 광고·홍보의 성격, 내용, 방법, 비용 분담기준 등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는 동참 및 비용분담 의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에 통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홍보 성격	부담비율		분담절차	비고
		본사 부담	가맹점 부담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광고·홍보의 경우	광고·홍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짐			당사 광고·홍보의 성격, 내용, 방법, 비용 분담기준 등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전 서면 통보 -> 가맹점사업자 동참 및 비용분담 의사 여부 결정 -> 당사 통보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가맹점사업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광고·홍보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광고·홍보활동의 계획과 방식, 기타 광고·홍보활동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가맹본부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절차	담당부서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으로 광고·홍 보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광고·홍보활동의 계획과 방식, 기타 광고·홍보활동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당사와 협의	사업지원팀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귀하는 가맹계약을 통하여 지득한 가맹본부의 학습방법 및 판매영업 관련사항등을 기밀로서 유지하고 계약해지 및 계약종료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및 누설하지 아니합니다.

가맹본부가 ‘판매영업 및 광고홍보계획수립상, 회원관리 운용자료상, 상품개발생산 및 단종계획수립상 또는 판매공급가 책정자료상’ 등 필요로 인하여 귀하에게 회원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귀하는 객관적 현황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회원의 동의를 얻어 가맹본부에게 적극 제공하기로 합니다. 단, 가맹본부는 위와 같이 취득한 회원의 개인신상정보를 기밀로서 유지하며 “윤선생 우리집앞 영어교실” 사업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유출시켜서는 아니됩니다.

귀하는 회원 관련 일체의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여서는 안됩니다.

귀하는 회원에 관한 정보 및 기타 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폐기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개인정보 관련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와 귀하는 가맹사업계약서의 위반이나 기타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가맹사업계약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맹본부와 귀하 중 일방이 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부담하는 금전지급의무, 가맹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의무 등 일체의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미지급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12. 영업제도에 관한 사항

1) 가맹지역본부 제도

가맹본부가 시행하는 가맹지역본부(통합가맹지역본부, 우영가맹지역본부) 제도를
준수·이행 하여야 합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일 정
합계		40일 내외
사업자 모집공고	- 홈페이지 안내 및 신문광고 등	사항 발생시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또는 사업설명회 참석 - 개설희망지역확인, 담당자 배정 및 응대	즉시
가맹사업에 대한 설명 및 상담	- 담당자 상담	즉시
가맹점개발 및 상권분석의 실시	- 1차 시장조사(입지 분석) - 개설 가능 여부 확인(영업지역 중첩여부)	필요시 실시
오리엔테이션	- 사업모델 이해 및 개설 프로세스 설명 -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상담일 이후 10일 이내
심사	- 서류심사: 개설신청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사업계획서	
최종 협의	- 가맹점 개설 승인	심사 후 7일 이내
가맹계약 준비	- 간판 및 인테리어 시공(표준CI 규정 준수) - SMART BEFLY시스템 설치(학습 환경 구축) - 교습소/공부방 설립 교육청 인허가 취득 및 사업자등록	약 3주
가맹계약의 체결	- 가맹계약의 체결 - 가맹계약서 1부 교부 보관 -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이후 및 가맹계약 준비 직후
가맹금 예치	- 국민은행에 영업개시 준비금 예치	계약체결 당일입금
신설 가맹점장 교육 실시	- 신설 가맹점장 소양 교육 - 가맹점 운영 기본 교육	필수 교육과정
가맹점사업장 개설	- 가맹점 오픈 및 영업개시	계약체결 후 5일 이내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귀하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위 전문가를 통하여 검토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해당 전문가로부터의 자문 확인서 사본을 본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본부와 귀하는 가맹계약의 해석 또는 가맹계약에 의하여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일반 상거래 관례에 따르기로 합니다.

해결이 되지 아니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와 귀하의 협의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계약에 관한 분쟁의 관할법원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본부와 귀하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 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점포환경개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해당 없음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판매촉진, 고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매월 1회이상 일정지역 가맹 점사장들과의 정기모임을 통 해 아래사항을 자문함. (우영본부장을 통해 진행할 수 있음) - 본사업장정책의 설명 - 우수사례 공유 - 워크샵등을 통한 브레인 스토밍	가맹본부 부담	문의: 사업지원팀 (02-2225-57 06)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판매촉진, 고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 진단 및 소요비용 등 포함) 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 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 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 하여 설명 및 결과 확인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사업지원팀 (02-2225-57 06)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윤선생 우리집앞 영어교실”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신설 가맹점사업자 초도물품 지원	신설 가맹점사업자 조기정착 및 회원모집을 위한 물품 지원	신설 가맹점사 업자	계약체결일 이후 1개월이내	현판, 전단지 등 초도물품 패키지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윤선생 우리집앞 영어교실” 가맹사업운영 및 표준화지침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윤선생 우리집앞 영어교실”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 (단위: 원, 부가세 포함)	비고
신설 가맹점사업자 교육	1일 이상	유료	최초 계약시 이수
기존 가맹점사업자교육	4일/년 이상	무/유료	교육에 따라 무/유료로 진행되며, 유료 교육의 경우 사전에 공지합니다.
가맹점 양수사업자 정착교육	1주	유료	가맹점 양수시 이수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위 교육, 훈련 및 연수실적등은 당사의 Yoon's BEFL프로그램학습방법, Yoon's BEFL프로그램판매영업방침, 회원교육 및 판매영업활동의 통일성 유지를 위한 필수적 거래조건인 바, 당사가 위 교육, 훈련 및 연수등을 지원하는 경우 귀하는 당사가 납득할만한 객관적 사유가 없는 한, 귀하는 위 제반 교육, 훈련 및 연수등에 적

극 참여·이수하도록 하며, 특히 “윤선생 우리집앞 영어교실” 회원교육 및 판매영업 활동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실시하는 당사가 지정한 의무 ‘교육·훈련·설명회(신입 가맹점사업자 교육, 전국 가맹점사업자 세미나, 신간교재 설명회, 시즌영업교육, 특별학기설명회, 지역별 영업전략 수립모임 등)’등에 필히 참여·이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당사는 귀하 등을 상대로 가맹계약에 따른 ‘각종 유무상 지원사항 제한, 상품공급중단 및 계약해지’등을 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해당 없음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해당 없음	

[별첨1] 재무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2] 전국 가맹점 현황표

*2023년 12월 31일 기준 지역별 가맹점 현황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첨3] 전국 가맹지역본부 현황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일부 지역은 공동영업지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별첨4] 상품공급내역표(2024년 3월 기준)

※ 윤선생 우리집앞 영어교실 프로그램(SB) 상품 품목구성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사업지원팀(02-2225-3458)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239 ~ 4241)**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